

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 안내문

부산지방고용노동청	
담당자	이승대 (051-850-6488)
FAX	(051-851-7418)

①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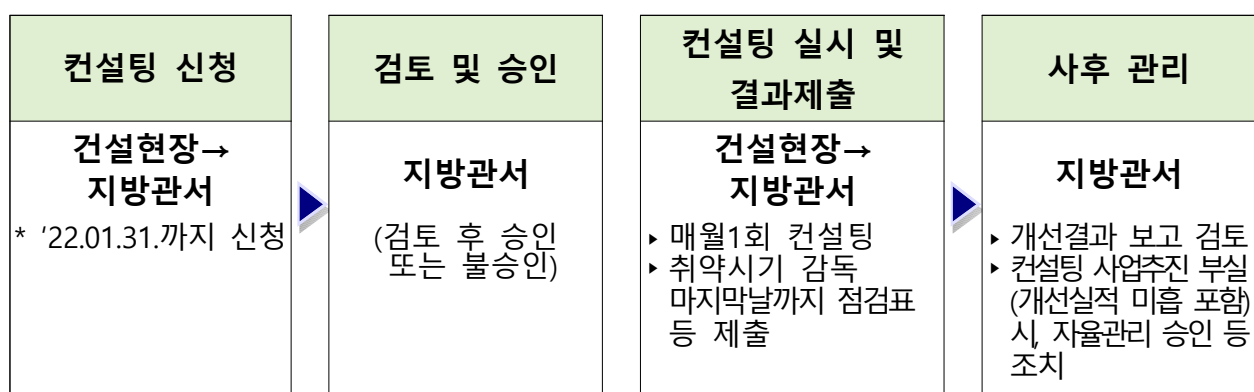
- (건설현장) '20~'21년(발생일기준)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,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 중 산재예방 실적평가(노력도)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(사고사망만인율)이 평균 0.5배 이하인 업체 시공현장
- (컨설팅 기관)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· 안전진단기관 소속외부전문가(2인1조)

<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>

-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
-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
- 3000억 이상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·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

※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

② 신청절차



③ 세부내용

-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,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

- 기관 소속 외부전문가(2인1조)가 월 15개소 이하 컨설팅 실시
- 외부 전문가가 **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(컨설팅)** 실시
 - (안전관리) 비계·거푸집·동바리·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의 구조 및 기술검토, 구조적 안정성, 추락관련 안전시설 등 중점 기술지도
 - (보건관리) MSDS, 근로자 건강진단,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
- 3대 취약시기(해빙기·장마철·동절기)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
 - ※ 자율안전관리 승인현장은 3대 취약시기 및 추락 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
-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보고서 검토* 후 **컨설팅 사업추진이 부실** (개선실적 미흡 포함)한 경우 **자율관리 승인 취소** 조치
 - * 계획서 이행여부, 컨설팅 내용의 적정여부, 컨설팅 및 본사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을 통해 판단(필요한 경우 해당 현장 확인 병행)
- 필요 시 부산청 자체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개선토록하고, 불응 시에는 감독 실시
 - * 본부 별도 지시사항 및 부산청 자체계획에 따른 수시감독 실시가능
-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, 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

④ 세부일정

- **'22.07.29.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참여신청서 제출**
 - ※ 제출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는 반려
- 계획서 내용, 공사기간, 작업 위험도, 현장의 개선의지(시스템비계·동바리 사용 등)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(필요 시 현장관계자 면담 혹은 '컨설팅 계획 발표회' 실시)
-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감독 기간 내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
- **'22.08.31.까지 승인(조건부 승인) 또는 불승인 통보**

부산지방고용노동청